

연계신용서비스 이용약관 신규조문대비표 (2023.10.12 개정)

현행	개정	비고
<p>제 15 조 (약관의 변경 등)</p> <p>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.</p>	<p>제 15 조 (약관의 변경 등)</p> <p>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(기존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, 신규대비표 등)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</p> <p>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</p>	<p>약관변경시 공시·통지 의무 확대</p>
	<p>제 19 조 (관할법원)</p> <p>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</p>

※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
공됩니다.

금융소비자보호법
및 내부통제
기준에 관한 문구
추가